

대상 확인 흐름도

※대상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안내 통지서**』 또는 『**지급요건 확인서**』 를 발송합니다.

2023년 12월 1일 현재, 후쿠오카시에 주민등록이 있다.

네

아니오

모르겠다

주민등록이 있는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주민등록이 있다고 추측되는 시구정촌 또는 본적지가 있는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2023년 1월 1일 시점에, 세대 전원이 해외에 있었다.

네

아니오

네

주민세가 과세되는 친족 등으로 부양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다.

아니오

네

세대 중에, 2023년도 **주민세 「소득할」 이 과세**된 자가 있다.

모르겠다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방법으로 과세 상황을 확인 바랍니다.

【확인 방법】

- ① 시민세 · 현민세 특별 징수 세액의 결정 · 변경 통지서 **※1**
- ② 시민세 · 현민세 납세통지서 **※1**
- ③ 각 구청 과세과 **※2** (2023년 1월 1일 시점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구정촌)

※1 각 통지서를 보는 방법은, 별지 「과세 상황의 확인 방법」 을 참조 바랍니다.

※2 전화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하신 후, 창구에서 문의 바랍니다. 또한, 회답 가능한 과세정보는, 창구에 오신 본인의 과세정보에 한합니다.

아니오

세대 전원의 2023년도 **주민세 「균등할」 이 비과세**로 되어 있다.

네

아니오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수속으로 가십시오.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 세대의 수속으로 가십시오.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수속

『지급 안내 통지서』 또는 『지급 요건 확인서』 를 받았다.

네

『지급 안내 통지서』 또는 『지급 요건 확인서』
를 확인해 주십시오.

아니오

『신청서』에 의한 수속이 필요한 경우 (주민세 비과세 세대 1세대당 7만엔)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급부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신 세대】

2023년 1월 2일 이후에
시외로부터 후쿠오카 시내에
전입했다.

【복수 세대】

2023년 1월 2일 이후, 시외
(해외를 포함) 에서 후쿠오카
시내에 전입한 세대원이 있다.

【단신·복수 세대 (공통)】

세금 수정신고 등에 의해서,
세대전원의 2023년도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가 됐다.

※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각 구청·출장소에서 입수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자 중, 18세 이하인 아동
(2005년 4월 2일생 이후의 아동) 을 부양하는 분

『(아동 가산) 지급 안내 통지서』 또는 『(아동 가산) 지급요건 확인서』
를 받았다. 【2024년 2월 27일 (화) 이후, 순차적으로 발송 예정】

네

『(아동 가산) 지급 안내 통지서』 또는
『(아동 가산) 지급 요건 확인서』 를 확인해
주십시오.

※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아동이 있는 경우는, 아래 『신청서 (신생아용)』
에 의한 수속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참조하십시오.

아니오

『신청서 (신생아용)』에 의한 수속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아동 가산 아동 1인당 5만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서 (신생아용)』를 제출하면, 급부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신생아) 을 부양하고 있다.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등의 이유로
별개 세대로 된 18세 이하인 아동을
부양하고 있다.

※ 『신청서 (신생아용)』는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각 구청·출장소에서 입수 가능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월) 부터 배포)

신생아를 부양하는 세대의 「아동 가산」에 한하여,
제출 기한은, 2024년 8월 31일 (토) 【소인 유효】입니다.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 세대의 수속

『지급요건 확인서』를 받았다.
【2024년 3월 11일 (월) 발송 예정】

네

『지급요건 확인서』를 확인 바랍니다.

※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아동이 있는 경우는, 아래 『신청서 (신생아용)』에 의한 수속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참조하십시오.

아니오

『신청서』에 의한 수속이 필요한 경우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 세대 1세대당 10만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급부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신 세대】

2023년 1월 2일 이후에 시외로부터 후쿠오카 시내에 전입했다.

【복수 세대】

2023년 1월 2일 이후에 시외 (해외를 포함) 에서 후쿠오카 시내에 전입한 세대원이 있다.

【단신·복수 세대 (공통)】

세금 수정신고 등에 의해서, 세대원 전원의 2023년도 주민세 「소득할」이 비과세가 되고, 세대 중, 적어도 1명의 주민세 「균등할만」이 과세가 됐다.

※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각 구청·출장소에서 입수 가능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월) 부터 배포)

『신청서 (신생아용)』에 의한 수속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아동 가산 아동 1인당 5만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신청서 (신생아용)』를 제출하면 급부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 (신생아) 를 부양하고 있다.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등의 이유로 별개 세대로 된 18세 이하인 아동을 부양하고 있다.

※ 『신청서 (신생아용)』는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각 구청·출장소에서 입수 가능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월) 부터 배포)

신생아를 부양하는 세대의 「아동 가산」에 한하여,
제출 기한은 2024년 8월 31일 (토) 【소인 유효】입니다.